

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

(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2.06.05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8.06.14. 교무위원회)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(개정 2022.12.26. 교무위원회)
(개정 2022.08.19. 교무위원회)
(개정 2025.07.14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담당시수의 허용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책임시간)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

② 책임시간수는 주간 및 야간, 겸직 전공(학부)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.

(개정 2022.12.26.)(개정 2024.8.19.)(개정 2025.07.14.)

제2조의 2 (책임시간의 일부감면) ① 총장은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별표1과 같이 한다. 다만,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상위보직의 책임시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전임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직교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정도에 따라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3조 (한계시간)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의 주당 한계시간은 2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직교원의 주당 한계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계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학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2018.06.14)

② 전임교원의 한계시간은 주간 및 야간 담당시간을 통산한다.

제4조 (강의시간배당) ① 강의담당은 동일 학과의 동일 학년에 치중할 수 없다.

② 매학기 담당과목 중 강의평가결과가 6점(10점기준)이하 되는 과목은 다음 학기 강의 배당에서 제외 한다.(개정 2010.8.2)

③ 강의시간은 주중 3일 이상으로 편성하며, 일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(신설 2018.06.14)

제5조 (타대학(교)출강)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타 대학(교)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책임시간의 일부감면을 받는 보직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대학(교)에 출강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개정 2022.12.27.)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8.1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7.14.)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전임교원 주당 책임시간 및 한계시간

직 위	책임시간	한계시간	비 고
부총장	2	4	
처장	4	8	
부처장, 학부장 국제교류원장, 국제교육원장, 국제학부교원(겸직) (개정 신설 2012.6.5.) (개정 2022.08.01.) (개정 2024.8.19.)	8	16	
학술정보원장.신문방송국주관, 백운생활관장.문화예술연구소장 학생생활연구소장 평생교육원장	10	20	
전공주임	10	20	
전임교원	12	20	